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5년 11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1일 삼척시장 제출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1995년 11월 1일
- 다. 심사일자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95.11.8)상정 · 심사후 보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95.11.9)심사 · 의결

II. 제안설명의요지(제안설명자: 관광개발과장 박무정)

가. 제안이유

- 군립공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군립공원의 지정 · 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사항등 군립공원 관련 중요사항을 사전심의토록 하므로써 자연풍경지보호 및 적정한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관광개발과장등 당연직 위원 7명과 그밖의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시장이 위촉하는자로 하여 총10인이내로 구성하고,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면장과, 당해공원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자중 시장이 위촉 하는자를 특별위원으로 함.

-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군립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사항, 군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함.

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 : 별첨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김성용)

본 조례안은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에 의거, 자연풍경지 및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신기면 대이리 지구등 관내에 산재해 있는 수려한 자연풍경지의 군립공원지정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군립공원 지정시에는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설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다수 위촉하는등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위원구성을 10인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당연직위원 7명을 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삼척시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결요건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V.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공원법에 당연직 위원이라는 상위 근거규정이 없는데 당연직 위원 7명이 상위법 조항 어디에 나와 있는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로 명시된 것은 없으나 위원 10명이 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업무관련 국장, 실과장은 모두 포함하게 되어 부득이 7명이 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관내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많이 있으며, 위원구성은 적어도 과반수 정도 서로 안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용역 기관의 전문가가 아니면 위촉 시 어려움이 많이 있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8일 이정훈 위원 외 3인

나. 수정이유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안 제2조 위원구성에 있어서, 제3항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인원 구분되어 있는 것을, 구분자체를 없애고,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 제고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의결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의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구성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다. 수정내용

당초 제출 조례안	수정안 내용
<p>제2조(구성)</p> <p>③ <u>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총무국장,</u> <u>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담당</u> <u>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관광개발과장</u> <u>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공원에 학</u> 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시장이 위 촉하는 자가 된다.</p>	<p>제2조(구성)</p> <p>③ <u>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u> <u>의원 1인, 그리고 공원에 학식과</u> 경험이 풍부한자중 시장이 위촉하 는자가 된다.</p>

VII. 심사결과

-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IX. 기타사항

- '95. 11. 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당연직위원 구성 조항과, 군립공원위원회 10인의 위원 가운데, 당연직위원으로 집행기관 소속 관계공무원이 과반수가 넘는 7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
- 군립공원위원회의 탄력성 제고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의결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는 문제점 제기로, 문제점 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키로 의결후 '95. 11. 9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시 다시 상정 심사함.